

##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-아 래-

지구명	위 치	지정개요			지정 사유	비 고
		유형	등급	지정면적(m <sup>2</sup> )		
조촌	전주시 덕진구 장동 534-7번지 일원	침수 위험 지구	가	860,000	지방하천 조촌천 배수영향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 및 우수관거 통수능 부족, 산지부 토사유입,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른 유출량 증가로 시가지 및 농경지 침수	
미산	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817번지 일원	침수 위험 지구	가	3,632,196	본 구역은 주변 하천(만경강, 전주천)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로 인해 내수배수불량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임	

○ 붙임 :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각 1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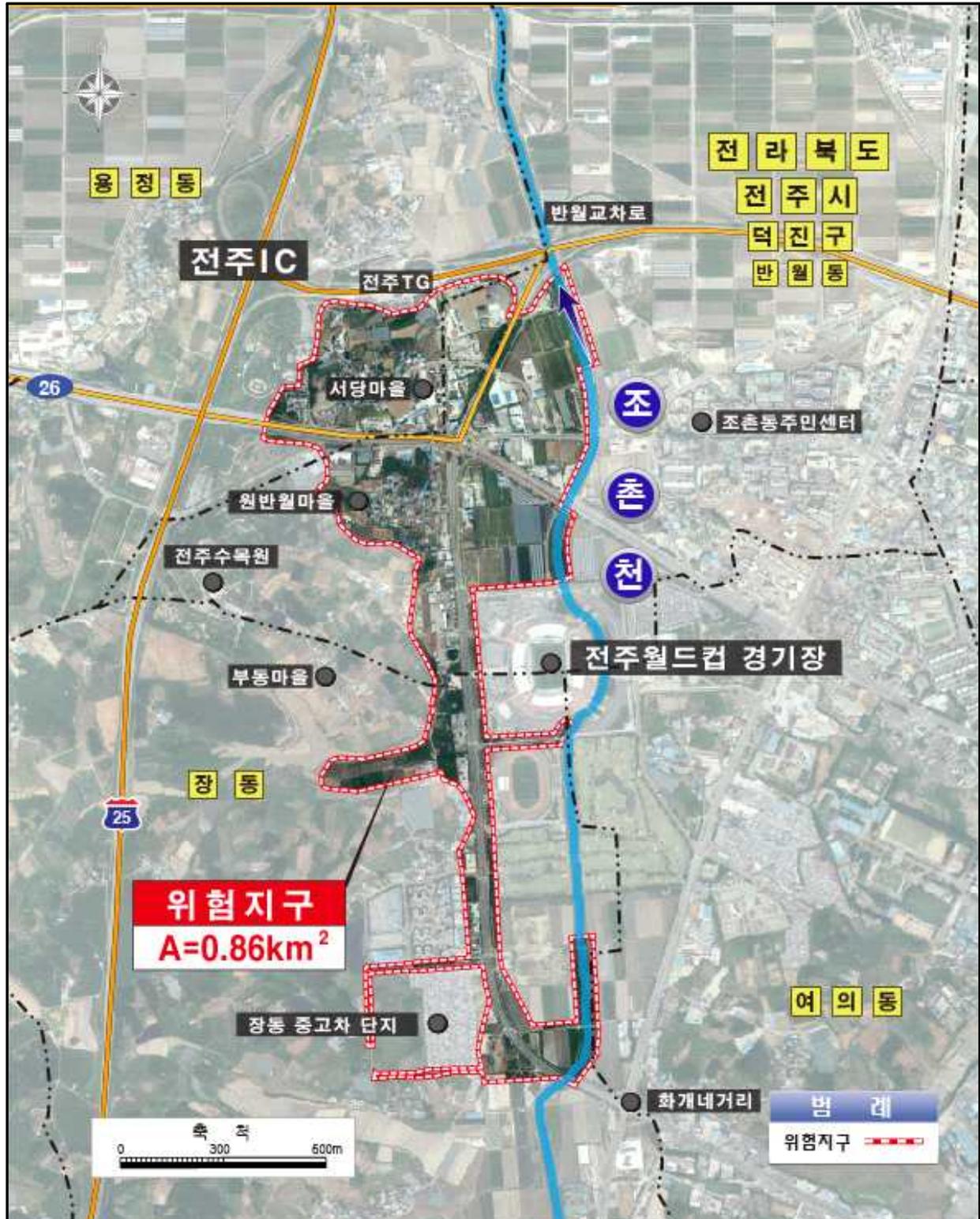
※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<http://luris.moct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전주시청 시민안전담당관(063-281-215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2년 3월 31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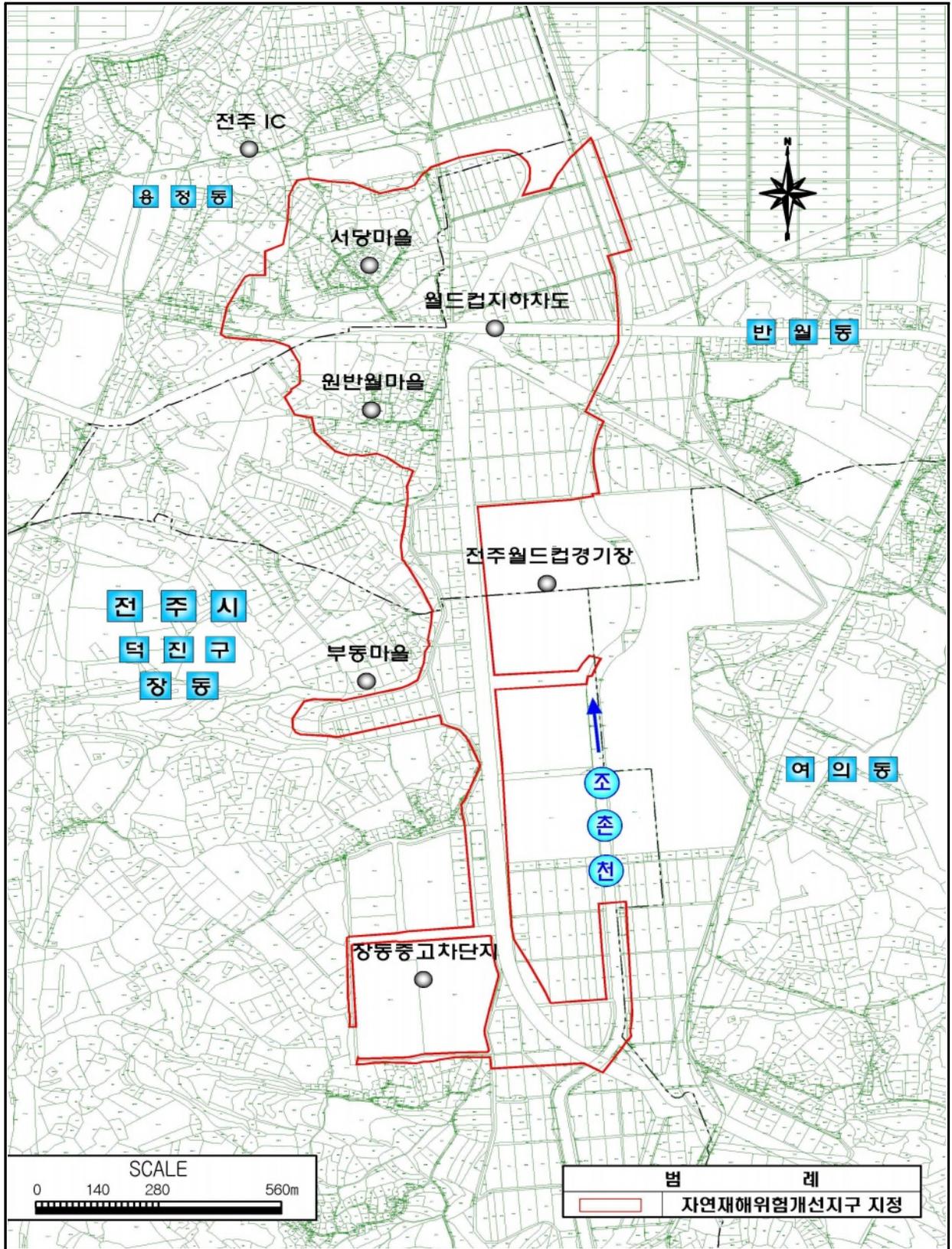
전 주 시 장

▣ 조촌지구

□ 현황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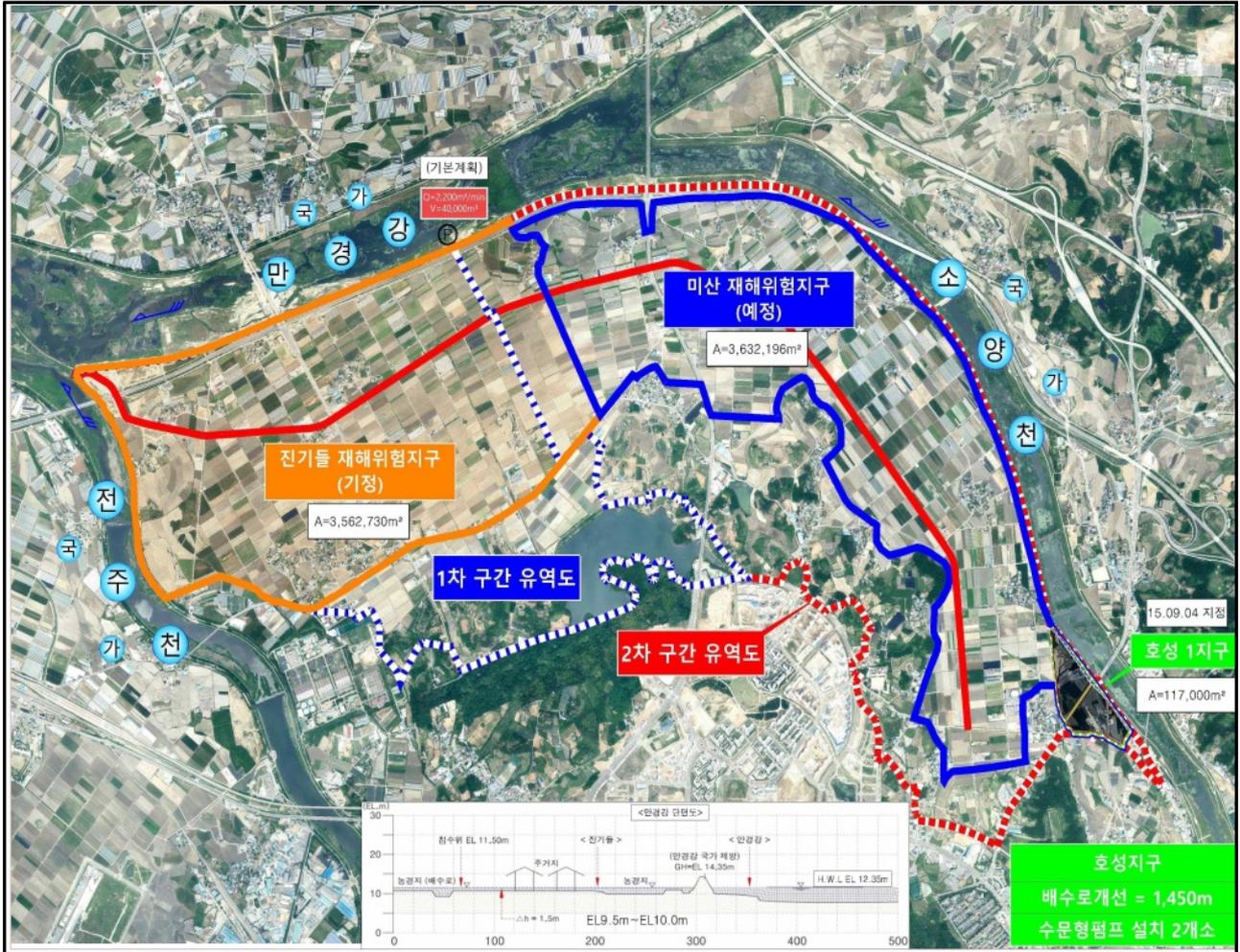


□ 지형도면



■ 미산지구

□ 현황도면



□ 지형도면

